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기 관 의 장
선 람	

qohqng
포항시

포항시보

제876호 2012. 3. 27(화)

◀ 입법예고 ▶

- | | |
|---|----|
| ○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제2012-517호) | 2 |
| ○ 포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입법예고 (제2012-557호) | 7 |
| ○ 포항시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2012-7호) | 11 |

◀ 고 시 ▶

- | | |
|---|----|
| ○ 포항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제2012-21호) | 18 |
|---|----|

◀ 공 고 ▶

- | | |
|--|----|
| ○ 2012 포항시 시민상 수상보자 추천 공고 (제2012-182호) | 23 |
| ○ 낙동정맥트레일 조성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제2012-184호) | 31 |

회 람								
--------	--	--	--	--	--	--	--	--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2 – 517호

포항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
고합니다.

2012년 3월 21일

포항시장 박승호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FTA(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되어 지방세법 중 자동차세 세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승용자동차 중 비영업용에 대한 배기량 구분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3.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2년 3월 21일 ~ 2012년 4월 10일(20일간)

6. 의견제출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재정관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제출처 및 문의처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재정관리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전화 054)270-2483, 팩스 054)270-2490, 이메일 phtax@korea.kr

라. 제출서식

입법예고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호 중 비영업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40원
1,600시시 초과	200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2012년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계산할 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날부터 이 조례의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세액 상당분은 종전의 제2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호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발효일 당시 종전의 제24조 제1호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 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공고 제2012 - 557호

포항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 3. 27.

포항시장 박승호

포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시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서 운영중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누구나 알기 쉽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 제18조1항중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하여 구매한다” 를 “재화나 서비스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계약 등)를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4.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경제노동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번지, 전화 270-2834, FAX 270-2479, E-mail : cs1323@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포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끝.

포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하여 구매하여야 한다”를 “재화나 서비스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계약 등)를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8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제18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 -----재화나 서비스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계약 등) 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2 - 7호

공 고

포항시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7일

포항시의회의장 이상구

포항시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가. 시의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시민, 단체 등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갈등 유발이 우려되는 사업 및 사안에 관하여
- 나. 사업 구상단계 또는 추진과정에서 사전에 발생 가능한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조정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원활한 시책추진을 도모 함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진정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갈등”, “갈등예방”, “갈등관리”, “갈등영향분석” 등을 명시함
- 나. 조례의 적용대상 범위,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안 제4조)
 - 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는 이 조례를 따르도록 명시함.
 - 사회 전반의 갈등예방 및 관리능력 강화 및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 등 시장의 책무를 명시
- 다. 갈등 관리 및 해결의 원칙 규정(안 제6조)
 - 이해관계인과의 신뢰 확보 및 대화와 타협의 원칙 명시
- 라. 갈등영향분석 규정(안 제7조)
 - 갈등 발생에 대한 예방적 측면에서 시책 결정 전 갈등영향분석을 실시
- 마.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회의 등을 규정(안 제8조 ~ 안 제10조)
 - 위원회 회의 소집의 요건 중 이해관계인의 요구를 포함시킴.
 - 심의사항으로는 종합적 시책 수립 추진사항, 갈등관리 대상의 지정 및 조정 사항, 갈등사항의 심의 권고 사항,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등으로 명시
 - 심의 결과에 대한 주요시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반영해야 함을 명시
- 바.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등을 규정(안 제12조 ~ 안 제14조)
 - 위원회 산하의 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갈등 사안별 협의체 구성

- 협의회의 활동기간은 조정안건이 해결될 때까지로 함(비상설 회의체 형태)
- 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에 관한 협의 결과문 작성, 이해관계인에게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사.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2. 4. 3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790-722)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270-5112, FAX 270-0222)

포항시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통하여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진정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갈등” 이란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 ② “갈등예방” 이란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고 잠정적 갈등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 ③ “갈등관리”란 갈등당사자들 및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④ “갈등영향분석” 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는 시의 주요시책으로 시민 또는 그 밖에 기관·단체간의 갈등 예방이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사회 전반의 갈등예방 및 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 ② 시장은 시의 주요시책 등을 수립·추진함에 따른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및 공유) 시장은 이해관계인이 주요시책 등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갈등관리 및 해결의 원칙) ① 시장은 주요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달성하려는 공익에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②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주요 시책 등을 수립·시행 및 변경할 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8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 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에서 갈등 예방 및 관리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관리 대상사업의 지정 및 조정 사항
3. 시, 주민 상호간 갈등사항 심의·권고 사항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포항시의회 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3. 시민단체
 4.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부서의 과장이 담당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갈등 이해관계인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심의결과의 반영)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12조(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 등) ① 시의 주요시책으로 발생한 갈등의 조정·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회 산하의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사안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는 위원회 위원과 이해관계인(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활동기간은 해당 조정안건이 해결될 때까지로 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회장이 정한다.

제13조(협의회 회장 등) ①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이해관계인간의 합의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협의회의 회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인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③ 협의회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협의결과문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협의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작성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한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갈등의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위원회 및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과 해당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 및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은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12 - 21호

포항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3번지 일원의 공동주택(삼도뷰엔빌2차)에 대하여 도시 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1일

포항시장 박승호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역명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포항 학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포항시 북구 홍해읍 학천리 3번지 일원	16,637	(감)16	16,621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적 (m ²)	변경사유
변경	-	포항시 북구 홍해읍 학천리 3번지 일원	16,621	확정측량 및 지적불부합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정정

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비고	
	면적 (m ²)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6,637	(감)16	16,621	100.0	-	100.0		
주거용지	14,741	(증)41	14,782	88.6	-	88.9	아파트	
도로용지	1,896	(감)57	1,839	11.4	-	11.1	- 소로2-23 : 1,793m ² - 도로공제 : 46m ²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기정	소로	1	23	10	국지 도로	170	홍해읍 학천리 456-38	홍해읍 학천리 456-37	일반 도로	-	포항시 고시 제2005-1 030호	
변경	소로	1	23	10	국지 도로	170	홍해읍 학천리 456-38	홍해읍 학천리 456-3	일반 도로			면적 감소

나)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23	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형조정에 따른 면적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정 : $1,813\text{m}^2$ - 변 경 : 감) 20m^2 - 변경후 : $1,793\text{m}^2$ 	확정측량시 소로(1-9호선)와 본 노선의 접속구간 일부중복으로 중복된 면적 제외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2)			획 지			비 고	내 용
		기정	변경	변경후	번호	위치	면 적(m^2)		
-	BL1	14,824	(증)4	14,828	R1	-	기정	14,741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조정
							변경	(증)41	
							변경후	14,782	
					R2	-	기정	47	“
							변경	(감)37	
							변경후	10	
					R3	-	기정	36	
							변경	-	
							변경후	36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BL1 (R1)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주택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층 이하
			평균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층 이하(평균층수 : 동별 지상층 아파트 연면적의 합/동별 건축면적의 합)
			최저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경축, 바람길 확보를 위해 주된 배치는 동서방향으로 계획 ■ 단지 중심부에 최고층 탑상형 배치권장 ■ 부대복리시설은 접근성 향상 및 커뮤니티 개방을 위하여 결정도에 표시된 구간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동 형태 및 길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층 이상은 탑상형으로 계획 - 판상형의 공동주택은 4호연립 이하로 계획. 다만, 전용 면적 60m²이하가 혼합된 경우에는 6호연립 이하로 계획 - 판상형은 20층 이하로 계획. 다만 2호연립인 경우에는 25층 이하로 계획 - 부대복리시설의 층수는 2층 이하로 규제 ■ 지붕 및 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상형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함 - 탑상형은 옥탑구조물을 설치하여 조형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고 옥탑부에 상징적 조명 연출을 권장 - 모든 부대복리시설은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지붕의 경우 옥상에 적치물을 설치를 금지하고, 옥상조경을 권장 ■ 계단 및 피로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해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 - 계절풍의 영향을 직접 받는 건축물의 경우 지상1층부를 필로티구조로 권장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계열의 색채 사용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 배후 구릉산지변 : 대지경계로부터 10m 지정 ■ 서측 관습로변 : 대지경계로부터 6m 지정 ■ 동측 및 남측 도로변 : 도로경계로부터 4.0m 지정

4) 교통처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BL1 (R1)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전면구간(권장) : 항시 개방하여 보행전용구간으로 조성 ■ 대지내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가로변은 차폐조경을 통해 차량으로 인한 소음 및 각종 환경의 악영향을 최소화
-		차량동선 및 주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내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정된 구간에만 설치 ■ 대지내 차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 - 건축선을 후퇴하여 발생한 이격공지는 차량통행을 불허 - 단지내부 도로는 십자형 교차로 설치를 지양 ■ 부설주차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규정 및 조례에 의한 산정대수 이상 충분히 설치 - 단지내 주차장 중 85%이상을 지하주차장으로 설치 - 장애인의 접근편의를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권장 -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전면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지
-	BL1 (R1)	보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도로에 폭2m의 보도를 설치 ■ 전면공지를 활용한 보행자도로는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 및 산책기능을 제고할수 있는 구조 및 재질로 조성 ■ 단지내 도로는 폭1.5m이상과 경사구배 8%이내 경사로를 설치 ■ 공동이용시설주변으로 큰 공지를 확보하여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를 권장
		기타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단지 전면부에는 담장설치를 불허 - 담장은 자연소재 투시형 담장(높이 1.2m이하)에 한해 설치 - 배후 구릉산지와 연결되는 구간은 녹지연속성을 고려하여 생울타리, 식수대 또는 둔덕을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토록 함 ■ 보육시설 : 위치는 1층에 한하며, 어린이 놀이터와 연계배치를 권장하고, 각 주동으로부터 보호 및 감시가 용이한 지점에 설치 ■ 옹벽 :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2m이하로 계획하며 나머지 발생사면에 대하여는 자연과 어울리도록 조경식재로 처리
		경관 및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면적률 개념을 도입, 자연순환 기능을 갖는 녹지를 40%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

3. 도시관리계획(운동장)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 실음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도시계획과 054-270-3466)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공 고

포항시공고 제 2012- 182호

2012 포항시 시민상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

명랑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런 시민에게 포항시민의 이름으로 시상하는 포항시 시민상 후보자 추천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31일

포 항 시 장 박 승 호

▣ 수상대상자

- 전체시민의 귀감이 되고 지역을 위해 헌신한 공적이 뛰어난 시민

▣ 시상인원 : 3명 이내(조례에 의함)

▣ 시상내용 : 기념패

▣ 시상일시 : 2012. 6. 9(토) 시민의 날 행사(예정)

- 수상자 결정 : 시민상 심의위원회

▣ 수상후보자 추천

-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장
- 개인추천의 경우 세대주 30인 이상의 연서

▣ 후보자 추천 접수기간 : 2012. 4. 1 ~ 4. 30

▣ 후보자 구비서류

1. 추천서 1부 (별지서식)
2. 공적조서 1부 (별지서식)
3. 이력서 1부
4. 기타 공적증빙서류 1부
5.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1부
6. 명함판 사진 1매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접수처 :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054 - 270 - 2074)
- 접수방법 : 방문접수(근무시간 내)

추 천 서

1.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성 별	

2. 공적개요

위의 사람을 2012년도 포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후보로 추천합니다.

2012년 월 일

장 (인)

○ 구비서류

1. 공적조서 1통
2. 이력서 1통
3. 공적증빙서류 1부
4.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1부

공 적 조 서

(1) 성명	(한자)											
(2) 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적(국적)	기재생략											
(5) 주소												
(6) 직업	(7) 소속											
(8) 직위	(9) 등급 (직급·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약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13) 추천훈격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속				(16) 직위			
(16) 직급				(17)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2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 거 포 상 기 록 (훈장 · 포장 · 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공적사항 작성시 시민상 심의위원회 심의시 정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공적내용을
1가지 사안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재 할 것.

(27) 공적사항

공 적 개 요 서

소 속	직 위	(성 명 세)	근속년수	공 적 개 요

현지조사확인서

1. 인적사항

소 속(민간인은 주소)			
직위(직급)		주민등록번호	
성 명	(한자)		

2. 현지조사 확인내용

3. 범죄 및 수형기록 확인내용 :

2012. . .

(현지조사자)

소속 :

직위 :

직급 :

성명 :

浦項市 市民賞 施賞現況

□ 시상실적 : 11회 32명 (본상 23, 장려상 9)

연번	년도	수상구분	부 문	당시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1	'79년	본상	교육문화	동지상고 교장	김 영	20. 10. 18	시승격30주년
2		"	사회복지	시정자문위원장	박경호	15. 12. 8	
3		"	산업경제	포항제철부사장	정명식	31. 7. 24	
4		장려상	교육문화	경향신문기자	김기윤	33. 12. 14	
5		"	체육진흥	포항전문대교수	이태준	42. 10. 24	
6		"	지역개발	상 업	김진국	37. 3. 3	
7		"	향토방위	송도파출소 경장	유상용	31. 5. 11	
	'81년	후보자	심의결과 수상자 없었음				
8	'90년	본 상	교육문화	영흥초등학교장	한윤봉	30. 1. 11	
9		"	사회복지	선린병원협동원장	김종원	14. 8. 25	
10		장려상	사회복지	포항우체국계장	김설자	40. 1. 15	
11	'99년	본 상	교육문화	중앙고등학교장	정주영	36. 6. 6	시승격50주년
12		"	체육진흥	시 체육회사무국장	김동호	48. 4. 29	
13		"	사회복지	기독병원이사장	한영빈	16. 6. 2	
14		"	산업경제	포항상의사무국장	김재홍	48. 9. 1	
15		"	지역개발	삼도주택 대표	허상호	51. 6. 9	
16		장려상	교육문화	창포초등 교사	이석우	64. 10. 16	
17		"	사회복지	포항향토청년회장	권원수	(1) 60. 3. 14	
18		"	산업경제	포항화훼법인대표	강형목	56. 6. 14	
19		"	향토방위	포항북부서 수사2계장	권혁주	51. 9. 22	
20	2000년	본 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포항시협의회장		김천수	33. 12. 18	
21		"	새마을운동 중앙회 포항시 지회장		김수근	48. 5. 27	
22	2001년	본 상	포항지역발전협의회 상임고문		오일수	30. 3. 7	
23		"	포항불교여성회장		김경희	35. 5. 3	
24		"	영일고등학교장		최상하	36. 3. 3	
25	2002년	본 상	한국총연맹 포항시지부 명예회장		박영근	35. 9. 7	
26		"	새싹유치원 원장		김춘희	56. 4. 12	
27	2003년	본 상	포항시행정동우회회장		이상훈	28. 2. 12	
28		"	포항여성인권지원센타 대표		황복희	45. 4. 11	
	2004년	※ 후보자 3명	심의결과 수상자 없었음				
29	2005년	본 상	포항1대학 교수		배용일	41. 6. 15	
	2006년	※ 후보자 신청이 없어 미수상					
	2007년	※ 후보자 3명	심의결과 수상자 없었음				
30	2008년	본 상	포항시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권순남	38. 3. 27	
31	2009년	본 상	포항차인회장		김인순	31. 12. 29	시승격60주년
	2010년	※ 후보자 3명	심의결과 수상자 없었음				
32	2011년	본 상	포항바다화석박물관장		강해중	40. 9. 18	

포항시 공고 제2012-184호

낙동정맥트레일 조성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낙동정맥트레일 조성사업 대상지 내 미동의 필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2일

포항시장 박승호

1. 사업명 : 낙동정맥트레일 조성사업

2. 위치 :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옥리, 침곡리, 감곡리, 정자리 기북면 성법리,
탑정리, 덕동리, 기계면 가안리, 남계리 일원

3. 총연장 : 39.4km

4. 사업기간 : 2012. 3. ~ 2014. 12. .

5. 편입대상지 내역 : 붙임참조

6. 편입대상지 도면 : 포항시청 도시녹지과에서 열람가능

7. 공고기간 : 2012. 3. 22. ~ 2012. 4. 4. (14일간)

8. 소유자 의견수렴 기간 : 공고기간 내

9. 유의사항

○ 본 토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동의 여부 등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내 의견제시가 없을 경우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시행

○ 기타 문의사항 : 포항시청 도시녹지과(☎054-270-3244)

붙임 : 편입대상지 내역 1부. 끝.

□ 편입대상지(소유자 소재불명) 내역

(단위:m²)

토 지 소 재 지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비고
읍 면	동 리	지 번					
죽장	상옥	산156-2	임	298	18	손달순	
		618-2	도	56	3	김영진	
		618-3	전	66	13	김영변	
		621-2	전	2,605	127	박용호	
		산41	임	15,330	122	이춘복	
	침곡	산3-2	임	329,653	109	정혜윤	
기북	성법	산3	임	659,306	669	선창산업(주)	
		산134-4	임	115,139	586	선창산업(주)	
		산129	임	30,942	82	정태락	
		산123-2	임	31,019	223	황위갑	
기계	가안	702	전	426	26	안차문	
		532	전	1,752	62	김태진	
		533	전	2,608	19	김태진	
		산59-3	임	31,339	228	김연목	
		산74	임	52,760	268	김영구	
		산82	임	65,455	63	서용갑	
		산85	임	7,158	85	서종춘	